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2. 19.(화) 15:30 < 12.20.(수) 조간 > 배포 2023. 12. 19.(화)

한국NCP(국내연락사무소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

- 양측 일부쟁점에 합의,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12.19.(화) 한국NCP 위원회*를 개최하여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(최종성명서)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.

* (구성) 위원장(산업부 투자정책관) 정부위원 3명(산업·환경·노동부 과장), 민간위원 4명

이 사건 이의신청인(샤넬코리아 노조)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,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,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·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(21.12.10)한 바 있다.

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*하였으나,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,

* (합의경과) '21.12월 단체협약, '22,1월, '23.9월 당사자간 교섭 및 협약 체결 등

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*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.

* (권고사항) ❶'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'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, ❷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·이행, ❸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

박덕열 투자정책관(한국NCP위원장)은 "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"고 밝히면서,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(www.ncp.or.kr) 게시 예정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	책임자	과 장	김현진 (044-203-4090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진 (044-203-409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**

□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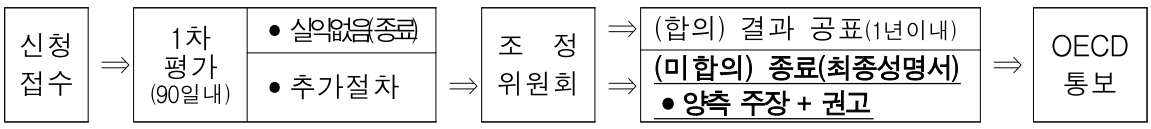
○ 다국적기업의 노사·인권·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**기업책임경영을 권장**하기 위해 제정(1976년)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

○ 가이드라인 위반 **피해자·이해관계자**는 국가별 이행기구(NCP)에 이의신청 제기 → **양측의 자발적 참여**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

□ NCP(국내연락사무소, National Contact Point)

○ OECD 가입국(38개),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(13개) 등 총 51개국에 설치, 한국은 '01년에 산업부에 설치·운영 중

※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



□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

○ 신청일 : 2021.12.10

○ 신청인 :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

○ 피신청인 : 샤넬코리아(Chanel Korea) 유한회사

○ 쟁점별 양측입장

이의신청인(노조측)	피신청인(회사측)	비고
ㅇ직장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 및 노동조합의 정보권·협의권 침해	ㅇ외부조사인을 지정하여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	**미합의**
ㅇ단체협상을 위한 부문별 재무제표 등 정보공개 거부	ㅇ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업정보 공유, 노조측 요구정보는 영업기밀정보에 해당	**미합의**
ㅇ휴일근무 강제,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·노동조합법 위반	ㅇ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 실시,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없음	합의
ㅇ일방적 근무일정 변경 등 현장직 차별 및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	ㅇ근무일정은 직원과 협의하고, 전환배치 등은 노조와 협의하는 등 차별대우 없음	합의
ㅇ코로나19 확산에도 일방적 업무투입, 감염병 대응책 노사합의에 대한 이행 회피	ㅇ'Covid-19 현장 대처 가이드라인' 등 배포, 관리자교육 등 신속한 정보제공 실시	합의